

2024.7.17.(수) 10:00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

의안번호	의안명
2713	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

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김복희

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

검 토 보 고

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28일 김기홍 의원 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6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.

1. 제안이유

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,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, 사회적 연대감 조성 및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- 다.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과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- 라.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).
- 마. 식품 등 기부 협조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.
- 바. 지도·감독과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 및 제10조).
- 사.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(안 제11조).

3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식품 등의 기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
- 검토결과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